♥ ♥ 꿈과 사랑·슬기를 가꾸는 행복한 학교 ♥ ♥

제2024-024호

♣ 교무실 251-5811 ♣ 행정실 251-5809 ♣ FAX 251-5813 http://www.cjsb.es.kr

2024학년도 졸업생 시상 규정 안내

학부모님께

따스한 봄의 기운처럼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학년도 본교 졸업생 시상 규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졸업생 시상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어린이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개성과 소질을 계발하여 칭찬하고 격려하며 어린이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졸업 시상 규정을 미리 밝힘으로써 시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 적용 근거

전주송북초등학교 학칙 제8장 제33조 학생포상에 근거하여 수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한다.

3. 운영 방침

가. 인사위원회의를 통해 수정 및 개정한다.

나. 졸업사정위원회를 조직·운영하며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교무부장, 위원은 6학년 담임교사로 구성하고 졸업생 시상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 학교생활을 즐겁고 성실하게 한 모든 학생들에게 합당한 시상을 한다.

라. 졸업생 수상자의 순위는 졸업생 수상 사정표에 의한 선발 순서로 한다.

마. 사정위원회의 소집

당 학년도 학년 초인 3월 - 4월 사이에 정기 위원회를 소집하여 졸업생 성적 사정 기준안을 성립한다. 필요시에는 학기 중에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바. 의사결정

위원 2/3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결정공고

졸업생 성적 사정 기준안 성립 후 그 결과를 6학년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공고한다.

4. 시상영역 및 선정기준

가. 학교장상

① 추천인원 : 영역별 시상 기준을 근거로 한다.

② 선정기준 : 시상 기준에 따른 졸업사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 시상 영역 및 기준

순	영역	시상기준	비고
1	공로상	- 2024학년도 전교 어린이 회장단 - 방송부원 및 도서부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어린이	중복시상 하지 않음.

		- 2024학년도 **시 단위(시,군,구)** 이상 교육기관, 관공서 및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이 주최 또는 협조한 대회(주최 또는 협조한 사실이 상장 또는 상장명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에서 3위 이내(1위, 2위, 3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상한 어린이 - 사전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출전한 **시 단위(시,군,구)**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1위, 2위, 3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상한 어린이 - 기타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인정되는 어린이	
2	**기능상**	- 개개인의 특기를 고려하여 가장 우수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 학생 시상함. (단, '바'항 시상의 배제에 해당하는 학생은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외할 수 있음.)	
3	**전인상**	- 개개인의 인성 부분을 고려하여 가장 우수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 학생 시상함. (단, '바'항 시상의 배제에 해당하는 학생은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외할 수 있음.)	

나. 기타 대외상

① 추천인원 : 평가 항목 3개 영역 종합 득점의 순위에 의하여 학급별 분배 시상한다. 단, 학급별 균등 분배 시상할 수 없을 시에는 동점자처리기준에 의하여 시상한다.

② 추천기준 : 평가 항목 종합 득점 순위에 의하여 수상 의사를 표시한 기관 및 개인의 지위 여부나 서열에 상관없이 상장수여 의사를 통보한 순서에 따라 시상한다.

③ 졸업사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한다.

④ 시상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상이 없을 때는 생략한다.

다. 평가 항목

① 어린이 임원 활동(최상위 배점 한 항목만 인정함)

구 분	전교어린이 회장	전교어린이 부회장	학급 회장	학급 부회장	학급 반장
배 점	1	1	0.5	0.3	0.1

② 방송부원 및 도서부원 활동(실제 참석한 활동 기간 동안 인정함)

기간 구분	1년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미만
배 점	1	0.7	0.5	0.3	0.1

③ 각종 경진대회 수상 및 표창장(교육기관, 관공서 주최로 한함)

구 분	상 장														
	장관(전국)			교육감(도)			교육장(시,군)			그 외 공공기관장			학교장		
	금상	은상	동상	금상	은상	동상	금상	은상	동상	금상	은상	동상	금상	은상	동상
배 점	2.0	1.7	1.5	1.5	1.2	1.0	1.0	0.7	0.5	0.5	0.3	0.1	0.5	0.3	0.1

표 창 장			
장관(전국)	교육감(도)	교육장(시,군)	학교장 (선행상, 봉사상)
1.5점	1.0점	0.7점	0.5점

- 대외상의 경우 공적 인정 기간 내에 담임 교사에게 상장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함.
- 각종 경진대회는 공문에 의거하여 학교에 접수된 대회이면서,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출전하여 수상한 상장으로 수상기관의 직인이 있는 것에 한함.
- 동일 종목으로 입상한 경우는 최상위 등급 1개만 인정함.
- 금상은 1위, 최우수상과 동급이며 은상은 2위, 우수상과 동급이고 동상은 3위, 장려상과 동급으로 함.
- 공로상 추천의 하한점은 1점, 상한점은 5점으로 함.
- 대상은 금상과 동일한 점수로 인정함.
- 단체상도 개인 실적으로 인정함.
- 표창장 : 기타 국가기관 표창장은 교육행정 기관에 준용함.

④ 출결 : **미인정결석** 시 결석일수당 1점씩 감함.

라. 동점자 처리

① 출결
② 수상 실적
③ 어린이 임원 활동 순에 따르되, 그래도 동점자가 있을 때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요청이 들어오는 순으로 지급하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 지명 장학금의 경우 교육기관 및 관공서에서 지명한 경우에만 학교에서 지급함)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평가영역종합득점이 가장 높은 학생
- 2순위 : 차상위 가정의 자녀 중 평가영역종합득점이 가장 높은 학생
- 3순위 :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워 담임의 추천을 받은 아동 중 평가영역종합득점이 가장 높은 학생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선정함.
- 학기 중에 이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함.

바. 시상의 배제

- **학교폭력 관련 사안 발생 시 이에 해당하는 가해학생**
-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 **본교 구성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사. 기타

① 공적 인정 시기는 2024. 03. 04. ~ 2024. 11. 30. 로 한다.
② 본 규정에 상세히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시행한다.

2024. 3. 14.

전 주 송 북 초 등 학 교 장